

● 제33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
운영계획 변경(안)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: 2851)

2025. 6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2851

I.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(안)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시장

나. 제출일 : 2025. 5. 26.

다. 회부일 : 2025. 5. 29.

2. 제안 이유 (제안 설명자 : 시민건강국장)

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9,259백만원에서 14,710백만원으로 5,451백만원 증가함에 따라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5,451백만원 증액하여야 함

나. 그러나, 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('25.2.27)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를 3,303백만원에서 3,345백만원 증액, 예치금을 4,923백만원에서 4,881백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음(20% 미만 변경)

다. 이에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당초 4,923백만원에서 10,332백만원으로 5,409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(20% 초과 변경)

[2025년 수입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8,231	23,682	5,451	29.9
세외수입	1,614	1,614	-	-
경상적세외수입	432	432	-	-
이자수입	432	432	-	-
임시적세외수입	33	33	-	-
보조금반환수입	33	33	-	-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1,149	1,149	-	-
과징금	1,149	1,149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6,617	22,068	5,451	32.8
보전수입등	14,866	20,317	5,451	36.7
융자금원금수입	5,607	5,607	-	-
예치금회수	9,259	14,710	5,451	58.9
내부거래	1,751	1,751	-	-
예탁금및예수금	1,751	1,751	-	-

[2025년 지출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(정책사업명)	당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8,231	18,231	23,682	5,451	29.9
식품안전 위생관리	3,303	3,345	3,345	42	1.3
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	1,500	1,500	1,500	-	-
교육·홍보사업	451	451	451	-	-
식중독 예방사업	185	185	185	-	-
음식문화개선사업	249	269	269	20	8.0
식품안전관리사업	565	565	565	-	-
조사 연구 평가 사업	353	375	375	22	6.2
행정운영경비	5	5	5	-	-
기금관리비	5	5	5	-	-
재무활동	14,923	14,881	20,332	5,409	36.2
내부거래지출	10,000	10,000	10,000	-	-
보전지출	4,923	4,881	10,332	5,409	109.9
여유자금 예치	4,923	4,881	10,332	5,409	109.9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윤혜주 (☎ 2133-4718)

5. 검토내용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은 '24 회계연도 결산 예치금 잔액이 최종 약 147억 1천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, 발생한 여유자금 약 54억5천1백만원을 (1) '25년 수입계획 중 '예치금 회수'(약 54억 5천1백만원)와 (2) '25년 지출계획 중 '재무활동(예치금)'(약 54억 9백만원)에 증액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'25년 수입계획(예치금회수) 약 54억 5천1백만원과 '25년 지출계획 재무활동(예치금) 약 54억 9백만원의 '차이' 약 4천 2백만원은 '25년 지출계획 1차 변경 당시 '재무활동(예치금)'에서 약 4천 2백만원 감액하여 '식품안전위생관리(식생활개선사업 평가·연구(2천2백) 및 먹거리 통계 기반 구축(2천))'으로 약 4천 2백만원 증액한 변경분이 반영됨.

2024년 지출 계획			(단위: 백만원)
	24년 예산(A)	24년 결산(B)	차이
예치금	9,259	14,710	5,451

<25년 수입 계획>

(단위: 백만원)

<25년 지출 계획>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(안)	증감	정책사업	(단위: 백만원)					
					당초(A)	1차 변경	2차 변경(B)	증감(C=B-A)	증감률(D=C/A)	
예치금 회수	9,259	14,710	5,451	재무활동(예치금 포함)	14,923	14,881	20,332	5,409	36.2%	
				식품안전 위생관리	3,303	3,345	3,345	42	1.3%	
				행정운영 경비	5	5	5	-	-	
				총계	18,231	18,231	23,682	5,451	29.9%	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영계획의 ‘정책사업’ ‘지출금액’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.
- 아울러, 「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(행정안전부)」 (p.282) 에 따르면, “정책사업비 20%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‘의결을 받은 액수’를 ‘기준’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”고 명시되어 있음.
- 따라서, 동 '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은 지출계획 중 ‘정책사업’ 재무활동(예치금 포함)을 당초 시의회의 의결 받은 지출계획보다 36.2% (20% 초과) 즉, 약 54억 9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제2항 ‘본문’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됨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

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○ 다만, '24 회계연도 결산 결과, 발생한 여유자금 약 54억5천1백만원이 (1) '24년 순 수입* 예산 대비 결산의 차이, 즉 '예산보다 초과된 수입액' 약 37억6천4백만원과 (2) 24년 순 지출* 예산 대비 결산의 차이 즉, '예산 보다 덜 지출된 집행잔액' 약 16억8천8백만원의 '합계'인 점을 고려할 때, 향후 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의 '추계'를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.

- 특히, '순 수입 및 순 수출의' '예산-결산'의 오차가 가장 큰 영역이 동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'용자 사업'(붙임) 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사료됨.

※ '순 수입 및 순 지출'은 예치금(회수) 및 예탁금(회수)를 제외한 금액

2024년 순 수입 (단위: 백만원)				2024년 순 지출 (단위: 백만원)			
	24년 예산 (A)	24년 결산 (B)	초과 수입 (B-A)		24년 예산 (A)	24년 결산 (B)	집행잔액 (A-B)
민간용자금 회수수입	1,635	4,776	3,141	용자성 사업	2,000	515	1,485
용자금회수 이자수입	17	31	14				
공공예금 이자수입	214	764	550				
예탁금 이자수입	1,548	1,476	△72	비용자성 사업	2,295	2,093	202
기타이자 수입	5	8	3				
과징금	798	1,151	353	기본경비	5	4	1
시·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	263	33	△230				
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	6	11	5				
계	4,486	8,250	3,764	계	4,300	2,612	1,688

[붙임]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‘융자 사업’ 예시

연번	조문 내용	근거 규정
1	영업자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)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	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제1호
2	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)의 급식시설 개수·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	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제7호
3	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	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16호
4	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(HACCP)(해썹) 적용 업소에 대하여 ‘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우선 지원 (법 제48조제11항)’	시행령제61조 제1항 제12호 및 법 제48조 제11항
5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)가 발령된 경우,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	식약처 고시 제2조제2호
6	시·도지사는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	법 제47조제2항

전문위원	김소은	02-2180-8144
입법조사관	신현태	02-2180-8145